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책임 명확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4. 11. 12.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자금세탁 기법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역량을 갖추어 관련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1. 개요
2.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3.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1. 개요

그간 업무규정은 이사회·경영진·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금번 업무규정 개정은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가. 이사회

금번 업무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되고,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 개선지시 등으로 명확해집니다.

나. 대표이사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대표이사의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하게

됩니다.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규정됩니다.

다. 준법감시인

업무규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관한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는 별도 규정이 없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도입 취지에 따라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검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라.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등을 포함한 위법·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자의 구분(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의 주체)을 달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고책임자 임명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되, 이와 같은 자격요건은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책임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인 '최소직위 요건'은 은행권과 대형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 중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며(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그 외 금융회사등의 경우 현행이 유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금세탁방지팀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규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의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시스템 점검, 금융·수사당국 대응, 법령 개정 관련 입법자문 등 포괄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KoFIU), 금융감독원, 수사당국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제 실무를 직접 수행한 전문인력 및 폭넓은 업무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자금세탁방지구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금세탁방지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보현

T. (+82) 2 6003 7069

파트너변호사

E. bhlee@yoonyang.com

이상빈

T. (+82) 2 6182 8558

파트너변호사

E. leesb@yoonyang.com

정성빈

T. (+82) 2 6182 8507

파트너변호사

E. sbjihung@yoonyang.com

김재경

T. (+82) 2 6182 8108

변호사

E. jkkim@yoonyang.com

김은진

T. (+82) 2 6182 8354

변호사

E. ejink@yoonyang.com